

「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일부개정(‘22.4.21.시행)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상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용어 등을 보완정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조문 신설(안 제36조)
- 소모품 취득 단가 기준 상향(조례안 별표1)
-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보완·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,
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기준과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,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상위법 개정 등 조례 개정 사유 발생 시 적기적시에 조례 등을 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통한 업무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길 바랍.